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2.12.31　외교통상부예규 제21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JPO라 함은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목표) JPO 파견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 사무국의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근무를 통해 국제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토록 하여 향후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함. <개정 2003. 1. 20>
2.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함.
3. 우리의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인력제공을 함으로써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4. 향후 파견자들의 근무경험을 국내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함.

제 2 장　선발심사위원회

제4조(선발심사위원회) JPO 파견자 선발에 관한 제반 방침 결정 및 적격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1. 20>
② 위원장은 국제기구국장, 위원은 과장 또는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바 있는 외무공무원중 유엔 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와 유엔과장을 포함한 약간명으로 한다. <개정 2010. 2. 19>
③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JPO 파견자 선발에 관한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2. 파견자 선발 및 관리
3. 파견 국제기구 선정
4. 기타 파견자의 선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 3 장 선발 및 파견

제7조(선발 및 파견)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JPO를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② JPO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JPO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①JPO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JPO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파견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JPO 파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JPO 파견자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파견기간내에 JPO 자격을 포기한 때 <개정 2006. 7. 20>
2.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 때

제8조의2(동반가족 경비) JPO 파견자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파견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①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로서 만 32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개정 2006. 7. 20, 2012. 12. 31>

② 단, 남성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개정 2006. 7. 20>

③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시 학위취득 인정서류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모집방법) ① JPO는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집공고는 인터넷 일간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 1. 20>

③ 모집공고시 파견 대상 분야를 사전에 공고하고, 분야별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신설 2010. 2. 19>

제11조(등록접수) ① JPO 지원자는 응시원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교통상부 유엔과(국제기구 인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1. 국문 및 영문 이력서 <개정 2003. 1. 20>
2. 대학교졸업증명서 (학사학위 및 졸업 예정 증명) 및 학위 증명서 <개정 2003. 1.20, 2006. 7. 20>
3. 주민등록등본 <개정 2003. 1. 20>
4. 병적증명서
5. 기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② JPO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JPO 응시자는 파견 희망 분야에 대해 제1지망과 제2지망을 표시한다. <신설 2010. 2. 19>

제12조(선발시험) ① JPO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영어시험(TEPS) 서류전형으로 하고,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영어시험(TEPS) 성적표를 제출하되, 동 점수는 9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 2. 19>

③ 제2차 시험은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평가하여 실시하되, 상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면접시험(30점) <개정 2003. 1. 20, 2006. 7. 20>
2. 영어인터뷰(20점) <개정 2003. 1. 20>
3. 영어필기(25점) <개정 2003. 1. 20>
4. 제2외국어 능력(6점) : 유엔 공용어 대상 <개정 2003. 1. 20, 2006. 7. 20, 2012. 12. 31>
5. 석·박사 학위(8점) <개정 2003. 1. 20, 2006. 7. 20, 2012. 12. 31>
6. 유관분야 근무경력(7점) <개정 2003. 1. 20, 2006. 7. 20, 2012. 12. 31>
7. 유관분야 경연대회 입상(1점) <개정 2003. 1. 20, 2012. 12. 31>
8.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등)(3점) <신설 2006. 7. 20>

④ 상기 제3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합격자 및 후보자 결정 등) ① JPO 선발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는 제12조 제2항의 영어시험(TEPS) 성적표 제출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최소 3배수, 최대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 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 2. 19, 2012. 12. 31>

② 최종 합격자는 당해년도 파견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각 모집단위별로 2차 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추가로 그 1배수를 후보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0. 2. 16>

③ 위원회는 분야별 지원 인원 및 지망 순위를 감안하여 선발하되, 분야별 조정이 가능하다. <신설 2010. 2. 19>

④ 제2항의 후보자는 최종합격자의 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그 후보자 자격을 보유한다.

⑤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제2차 시험중 면접시험, 영어인터뷰 및 영어필기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2. 연소자

⑥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3. 1. 20]

제14조(파견기구 및 파견자 결정) ① 최종 합격자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은 정책적 필요성, 각 합격자의 전공, 경력, 모집시 지원한 파견희망 분야 등을 고려, 파견 국제기구를 지정하여 파견한다. <개정 2010. 2. 19>

② 합격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제13조 제2항의 후보자중에서 성적순으로 파견대상자를 선정한다.

1. 지정된 국제기구로 파견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2. 지정된 국제기국의 파견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3. JPO로 파견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2. 12. 31>

[전문개정 2003. 1. 20]

제15조(JPO 파견의 취소) ①외교통상부장관은 JPO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JPO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파견된 국제기구로부터 해직 당한 경우
3. 관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파견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없이 파견기관을 변경한 경우
5. 파견된 국제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6.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개정 2006. 7. 20>
7.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개정 2006. 7. 20>
8. 제8조2항의 동반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2. 12. 31>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파견경비의 지급중지) 외교통상부장관은 JPO 파견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JPO 파견이 취소된 경우에는 파견 경비의 지급을 중단한다.

제 4 장 복 무

제17조(JPO 파견자의 의무) ① JPO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JPO 파견자는 파견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JPO 파견자의 관리) ①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내의 JPO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JPO 파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JPO 파견자는 파견되는 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을 마치고 귀국하는 때 및 파견기관 내의 부서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JPO 파견자는 매 6개월마다 정기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을 거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JPO 파견자는 파견종료후 30일이내에 파견기간중의 종합활동보고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①JPO 파견자가 파견만료 후 파견되어 근무했던 국제기구 또는 여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 채용되지 못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동 JPO 파견자에게 유관기관을 지정하여 파견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국내 유관기관에의 취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제20조(적용범위) JPO 파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 8. 24, 개정 2012. 12. 31>

부 칙 <1996. 3. 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2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3>

이 예규는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제1항의 연령제한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2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20>

이 예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연령제한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1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